

2017년 1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I 개최 개요

1. 일 시 : 2017. 11. 20.(월), 16:30 - 18:35
2. 장 소 : 법무부 차관 회의실(703호)
3. 출석위원 : 위원장 : 천대엽
위 원 : 박균택, 김학성
황순철, 이용식, 강수진, 장연화
4. 출석간사 및 서기 : 간사 서기관 양원동, 서기 교감 김광현
5. 개회선언

차관님께서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차관님이 지명한 본인(천대엽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1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II 안건 심의

《심의 안건》

1. 진행상황

위 원 장 : 간사는 안전상정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안전상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일반수형자 715명이 심사신청 되었습니다.

- 심사유형별 최저 형집행율은 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형집행률 60%이상, 일반수형자 형집행율 65%이상, 제한사범 형집행율 70%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적격 검토** 기준은 재범예측지표 1급, 경비처우급 S2급 기준으로 일반범죄는 형집행을 70%, 강력범죄는 형집행을 83% 전후로 검토하였습니다.

부적격 검토는 수형생활태도가 불량하거나, 보호관계가 미약한 자와 동종 및 이종전과가 다수인 자, 국민법감정과 사회안전망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 부적격 검토 하되, 잔형기간이 짧고 수형생활 양호한 자에 한해 선별적 적격 검토하였습니다.

신중 검토는 신분특이자 1명입니다.

검토결과, 가석방심사 대상인원 총 715명 중 적격의견 678명 (94.8%), 부적격의견 36명(5.0%), 신중검토 1명(0.2%)으로 각 상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 원 장 : 적격안건, 부적격안건, 신중검토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는 적격안건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신청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1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격 2권에 있는 심사번호** [REDACTED]는 [REDACTED]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접견 후 검찰에 추가사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에 있어 가석방이 부적격하다는 [REDACTED]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적격으로 검토함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수형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의 견 : [REDACTED]는 부적격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 [REDACTED]는 부적격 의결합니다.

간 사 : 적격의견에 대한 검토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토기준에 근거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적격 의견으로 상정 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사범**입니다.

심사번호 [REDACTED] 등 4명은 교통사범(사망)으로 종합보험가입 1명, 미합의 3명으로, 금고 수형자인 [REDACTED]을 제외한 3명은 취사장 등에서 성실하게 작업하는 등 수형생활 태도, 보호관계 양호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REDACTED] 등 23명은 교통사범(상해)으로, 7명 합의, 4명 종합보험가입, 3명 공탁·책임보험 가입·일부합의, 7명 미합의이며, 피해자와 감정, 취사장 등에서 성실하게 작업하는 등 수형생활 태도, 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REDACTED] 등 3명은 교통사범(도주차량-사망)으로 2명 종합보험 가입, 1명 미합의, 수용동청소 등에서 성실하게 작업하는 등 수용생활태도 및 보호관계와 완화요건 등을 고려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REDACTED] 등 11명은 교통사범(도주차량-상해)으로 3명 합의, 4명 종합보험가입, 1명 처벌불원, 1명 공탁, 2명 미합의 이며, 피해자 감정, 취사장 등에서 성실하게 작업하는 등 수형 생활 태도, 완화요건, 보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사범(환자·장애인·고령자)**입니다.

심사번호 [REDACTED] 등 18명은 보호사범(환자, REPI-1·2급)으로 S2급 14명, S3급 4명으로 대상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건강상태, 수형생활태도, 보호관계, 형집행을 등을 고려 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10명은 보호사범(환자, REPI-3급)으로 S1급 1명, S2급 3명, S3급 7명으로 대상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건강상태, 수용생활태도, 보호관계, 형집행을 등을 고려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13명은 보호사범(70세이상 고령)으로 피해변제 · 형집행을 · 수용생활태도 · 보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 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범입니다.

심사번호 ■■■■■ 등 83명은 일반사범(REPI-1·2급, S1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 완화요건 · 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 · 직업훈련 이수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 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320명은 일반사범(REPI-1·2급, S2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 완화요건 · 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 · 직업훈련 이수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 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20명은 일반사범(REPI-1·2급, S3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 완화요건 · 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 · 직업훈련 이수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 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8명은 일반사범(REPI-3급, S1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 완화요건 · 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 · 직업훈련 이수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 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73명은 일반사범(REPI-3급, S2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 완화요건 · 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직업훈련 이수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37명은 일반사범(REPI-3급, S3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완화요건·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직업훈련 이수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다음은 **제한사범**입니다.

심사번호 ■■■■■ 등 22명은 제한사범(REPI-1·2급, S1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완화요건·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직업훈련 이수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11명은 제한사범(REPI-1·2급, S2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완화요건·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직업훈련 이수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2명은 제한사범(REPI-1·2급, S3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완화요건·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직업훈련 이수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3명은 제한사범(REPI-3급, S1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완화요건·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직업훈련 이수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 등 2명은 제한사범(REPI-3급, S2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완화요건·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REDACTED] 등 2명은 제한사범(REPI-3급, S3급)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완화요건·각 취업장에서 성실한 작업 등 수용생활태도·보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REDACTED] 등 3명은 「중간처우의 집」 대상자로서, 모두 일반사범이며 4개월 이상의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 및 출소 후 보호관계 양호하여 각 적격으로,

심사번호 [REDACTED] 등 9명은 「사회적응훈련생」으로 교통사범 1명, 일반사범 5명, 제한사범 3명으로 4개월 이상의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 및 출소 후 보호관계 양호하여 각 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수형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대상자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의 견 : 심사번호 [REDACTED]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고의성이 의심되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3명 부적격, 범죄경력이 없으며 교통사고에 대한 고의성 문제는 공판절차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3명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위원들의 의견이 3:3으로 갈리었습니다. 저도 공판결과를 존중하고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 4명의 찬성으로 [REDACTED]은 적격 의결합니다.

위 원 의 견 : 심사번호 ■■■■■은 16세 여자를 범행에 이용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공범들이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주범격인 이 사람의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2명 반대, 가석방 개선안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대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등 심사기준에 변경이 있고, 취사장에서 1년5개월 동안 일하는 등 수형생활 태도 등을 감안하여 4명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심사번호 ■■■■■은 적격으로 의결합니다.

위 원 의 견 : 심사번호 ■■■■■은 동종범죄경력 3회로 재범위험성이 우려되어 2명 부적격 의견, 재범예측지표 1급이며 범죄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고 게임기를 당구장 또는 오피스텔에 소규모로 설치하여 한 점 등을 감안하여 4명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심사번호 ■■■■■은 적격으로 의결합니다.

위 원 의 견 : 심사번호 ■■■■■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악성 코드를 이용하여 PC를 감염시키고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공범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점을 고려하여 2명 부적격, 범죄경력이 없고,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명 보류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심사번호 ■■■■■은 심사보류로 의결합니다.

위 원 의 견 : 심사번호 ■■■■■는 동생이 사망하자 조카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경력 등을 고려 2명 부적격, 90% 이상 형을 집행하였고 일부변제 등을 고려하여 4명 적격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심사번호 ■■■■■는 적격으로 의결합니다.

간 사 : **부적격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번호 [] 등 36명은 전과경력, 죄명, 범죄내용, 합의 등 피해회복 관계, 재범 간격, 보호관계, 징벌, 재범가능성, 수형생활 태도,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일 동 : 심사번호 [] · [] · [] 등의 범죄는 기존 보이스피싱 사범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형을 함께 받았다는 이유로 가석방 부적격의견으로 상정되었는데 일반 보이스피싱 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견 1명, 범죄단체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죄조직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 조직적으로 범죄를 했다고 판단한 검찰과 법원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므로 범죄의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된다는 의견 5명입니다.

위 원 장 : 심사번호 [] · [] · []을 **부적격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앞으로 범죄단체로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위 원 일 동 : [] 등 33명은 간사의 부적격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원 장 :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부적격 심사 대상자 [] 등 33명은 전원 **부적격으로** 의결합니다. 간사는 **신중검토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신중검토 대상자는 신분특이자 1명입니다.

- 심사번호 [] 소 []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으로부터 후보자
공천에 힘을 써주라는 부탁과 함께 1억 2,500만원의 정치자금
수수하여,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 2,500만원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89.2%, 잔형기 1개월 29일 이며, 병과된 추징금은
완납하였습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죄질은 불량하나 병과된 추징금을 완납하였으며 재범
위험성 낮고 보호관계 양호한 점 등을 고려 “신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위 원 의 견 : 심사번호 는 범죄경력·추징금과 벌금 완납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전원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심사번호 는 적격으로 의결합니다.

이상 2017년 11월 정기 가석방심사 신청자 715명에 대한 심사
결과 적격의견 중 심사번호 는 부적격, 은
심사보류로 의결하고 부적격 36명은 전원 부적격으로,
신중검토 1명 는 적격으로 의결하여, 가석방 심사
대상자 총 715명 중 적격 677명, 부적격 37명, 심사보류 1명
으로 각 의결합니다.

2017년 성탄일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17. 12. 18(월), 16:30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의 견 : 위원장님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 원 장 : 말씀해 주십시오.

위 원 의 견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기준과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의 편제가 범죄 사실, 범죄경력, 수용생활, 상벌 등의 순서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심사 대상자의 범죄내용과 범죄경력 등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 가석방 심사에 더 중요하게 작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수용생활 중 수형자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비중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의 편제 순서에서 수용 생활란 등을 앞쪽으로 두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위 원 장 : 좋은 의견 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 원 의 견 : 현 심사표 편제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석방심사에서 수형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감정, 재범위험성 등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 심사표 편제를 수정하는데 실무적으로 필요한 절차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 사 :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서식이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원 장 : 여러 방면에서 함께 생각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장기과제로서 위원님들의 견해 정리와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 추후에 다시 논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 폐회선언

위 원 장 : 이상으로 2017년 1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본 회의는 2017. 11. 20(월), 16:30에 시작하여 18:05분에 끝나다. 끝.